

사실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장

증명종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위임하는 사람 (발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용도		제출처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발급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은 작성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유효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